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결산 개요	1
1. 결산 총괄	3
가. 세입	3
나. 세출	3
II . 주요내역	5
1. 세입	7
가. 총괄	7
나. 집행내역	8
(1) 수납액 내역	8
(2) 미수납액 내역	8
다. 집행실적 분석	9
2. 세출	10
가. 총괄	10
나. 집행내역	12
(1) 전용액	12
(2) 불용액	13
다. 집행실적 분석	14

3. 재무제표 분석 15

가. 총괄 15

나. 재무제표 분석 16

Ⅲ. 검토의견 17

1. 세출 19

가. 총괄개요 19

나. 병역판정검사 고도화·체계화 필요성 등 20

(1) 사업 개요 20

(2)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고도화·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 22

(3) 입영판정검사 수행 능력 제고 필요 28

다. 병역면탈 행위 수사 및 처벌 강화 33

(1) 사업 개요 33

(2) 과학적·체계적인 병역면탈 행위 단속 수사 기법 도입 필요 33

(3) 병역면탈 행위자 처벌 수준 강화 방안 마련 필요 38

라. 산업지원인력 사업 운영·관리 강화 40

(1) 사업 개요 40

(2) 병역지정업체 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 실태조사 철저 필요 41

마.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사업 연계 검토 45

(1) 사업 개요 45

(2) 취업맞춤특기병 사업과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 연계 강화 필요 46

바. 현역병 충원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50
(1) 사업 개요	50
(2) 현역병 충원률 제고 및 월별 균형 충원 필요	51
사.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집행 부진	55
(1) 사업 개요	55
(2) 사회복지준비금 예산 과다 불용 방지 방안 마련 필요	56
아. 병무행정정보화 관련	60
(1) 사업 개요	60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보안 강화 방안 마련 필요	61

■ 참고자료 67

[참고자료 1] 2023년 지방청 병역판정검사 운영 현황	69
[참고자료 2] 병역판정검사 세부 검사항목	71
[참고자료 3] 병역지정업체 대상기관 및 선정기준	72
[참고자료 4]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현황	74
[참고자료 5] 취업맞춤특기병 및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사업 실적	75
[참고자료 6]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76

I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 병무청은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입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3억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4억 8,700만 원이 수납되고 4,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 미수납액 4,8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임.

[2023년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3년	300	534	487	-	48
2022년	302	531	483	-	48

나. 세출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3,331억 900만 원으로, 이 중 3,074억 8,800만 원(92.3%)을 집행하고 256억 2,100만 원(7.7%)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3년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본 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등	전용액 등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33,109	333,109	-	±782	333,109 (100%)	307,488 (92.3%)	-	25,621 (7.7%)
2022년	272,952	272,021	-	±68	272,021 (100%)	241,581 (88.8%)	-	30,440 (11.2%)

○ 세출예산현액 3,331억 900만 원은 당초 예산과 같으며,

전용액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억 3,800만 원, 동원훈련 및
사회복무요원교육 수송임차료 2억 5,700만 원, 한시임기제 및
청년인턴 고용부담금 8,100만 원, 예산성과금 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인건비 24억 500만 원, 기본경비 3억 4,800만 원, 사업비
228억 6,800만원 등 총 256억 2,100만원임.

II

주요내역

1. 세입

가.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 (C/B)	불납 결손액 (D)	% (D/B)	미수납액 (E=B-C-D)	% (E/B)
합 계	300	534	487	91.1	-	-	48	8.9
○ 토지대여료 (511)	1	2	2	100.0	-	-	-	-
○ 건물대여료 (512)	116	111	111	100.0	-	-	-	-
○ 기타관유물 대여료 (513)	20	29	29	100.0	-	-	-	-
○ 과태료 (563)	5	48	-	0.0	-	-	48	100.0
○ 변상금 (571)	-	14	14	100.0	-	-	-	-
○ 위약금 (572)	4	-	-	0.0	-	-	-	-
○ 기타경상 이전수입 (596)	80	273	273	100.0	-	-	-	-
○ 기타잡수입 (691)	3	2	2	100.0	-	-	-	-
○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713)	71	55	55	100.0	-	-	-	-

* 자료 : 병무청

나. 집행내역

(1) 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별	수납액	수납액내역
계	487	
○ 토지대여료	2	○ 청사부지 일부 임대
○ 건물대여료	111	○ 구내식당(서울청, 충북청)
○ 기타관유물 대여료	29	○ 병역판정검사장 나라사랑카드발급소 임대 등
○ 변상금	14	○ 서울청 구내식당 물품 대여료
○ 기타경상이전 수입	273	○ 주거용 임차숙소 사용료
○ 기타잡수입	2	○ 병무행정 보안체계 고도화 사업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금액
○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55	○ 소속기관 임차숙소 전세보증금 반납
		○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 정산
		○ 과오납 환수 등
		○ 폐기문서 및 고철 매각대금 등
		○ 의료장비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 자료 : 병무청

(2)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별	미수납액	미수납액내역
계	48	
○ 과 태 료	48	○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2건)

* 자료 : 병무청

다. 집행실적 분석

- 병무청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3억 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5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1.1%인 4억 8,700만 원임.
-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기존 지출했던 임차숙소보증금 2억 2,200만원이 추가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추가 징수 결정된 것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8.9%로 나타나고 있는바, 미수납액은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게 부과한 체납과태료(2건) 4,800만 원임.

2. 세출

가.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확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B)	(B/A, %)
	본 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등					
계	333,109	333,109	-	±782	333,109	307,488	-	25,621	7.7
□ 인 건 비	135,595	135,595	-	-519	135,076	132,671	-	2,405	1.8
□ 기본경비	9,678	9,678	-	+525	10,203	9,855	-	348	3.4
□ 사 업 비	187,836	187,836	-	+257 -263	187,830	164,962	-	22,868	12.2
○ 병역자원선발	18,174	18,174	-	-	18,174	17,653	-	482	2.7
• 병역판정검사	18,174	18,174	-	-	18,174	17,692	-	482	0.8
○ 병역자원충원	4,638	4,638	-	-	4,638	4,333	-	305	6.6
• 현역병모집	3,583	3,583	-	-	3,583	3,320	-	263	7.3
• 현역병입영	377	377	-	-	377	370	-	7	1.9
• 병력동원소집 관리	678	678	-	-	678	643	-	35	5.1

구 분	예산액		예산 확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B)	B/A %
	본 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등					
○보충역복무지원	8,652	8,652	-	-	8,652	8,449	-	203	2.3
• 산업지원인력	331	331	-	-	331	323	-	8	2.4
• 사회복무요원 교육	5,860	5,860	-	-	5,860	5,837	-	23	0.4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272	1,272	-	-	1,272	1,246	-	26	2.0
• 대체역심사	1,189	1,189	-	-	1,189	1,043	-	146	12.3
○ 병무 행정 지원	156,372	156,372	-	+257 -263	156,366	134,488	-	21,878	14.0
• 병무행정안내	1,807	1,807	-	-	1,807	1,764	-	43	2.4
•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5,075	5,075	-	-	5,075	5,023	-	52	1.0
• 병무행정운영	8,714	8,714	-	-263	8,451	7,883	-	568	6.7
•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3,545	3,545	-	-	3,545	3,391	-	154	4.3
• 병역의무자지원	120,480	120,480	-	+257	120,737	100,283	-	20,454	16.9
• 사회복무요원 운용	5,116	5,116	-	-	5,116	4,958	-	158	3.1
• 시설관리	2,503	2,503	-	-	2,503	2,425	-	78	3.1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60	260	-	-	260	259	-	1	0.3
• 병무행정정보화	8,872	8,872	-	-	8,872	8,502	-	370	4.2

* 자료 : 병무청

나. 집행내역

(1) 전용액

(단위: 백만원)

목 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782	
○ 인 건 비		○ 해당사항 없음
○ 물 건 비	695	○ 운영비 : 695백만원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 438백만원 - 사회복지요원교육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임차료 : 257백만원
○ 이 전 지 출	87	○ 보전금 : 6백만원 - 예산성과금 지급 : 6백만원 ○ 민간이전 : 81백만원 - 청년인턴 및 한시임기제 등 고용부담금 : 81백만원
○ 자산취득 및 운용		○ 해당사항 없음

* 자료 : 병무청

(2) 불용액

(단위: 백만원)

목 별	예산현액	불용액	%	불용액 내역
계	333,109	25,621	7.7	집행잔액 25,621백만원
○ 인 건 비	142,109	2,561	1.8	집행잔액 2,561백만원
· 직원보수	123,202	1,788	1.5	집행잔액 1,788백만원
· 연가보상비 등	18,907	773	4.1	집행잔액 773백만원
○ 물 건 비	58,858	2,299	3.9	집행잔액 2,299백만원
· 운 영 비	52,011	2,167	4.2	집행잔액 2,167백만원
· 여 비	4,103	69	1.7	집행잔액 69백만원
· 업무추진비	550	2	0.3	집행잔액 2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554	4	0.7	집행잔액 4백만원
· 연구용역비	1,639	57	3.5	집행잔액 57백만원
○ 이 전 지 출	124,451	20,513	16.5	집행잔액 20,513백만원
· 보 전 금	118,664	20,441	17.2	집행잔액 20,441백만원
· 민간이전	5,787	72	1.2	집행잔액 72백만원
○ 자 산 취 득 및 운 용	7,691	248	3.2	집행잔액 248백만원
· 건 설 비	1,606	92	5.7	집행잔액 92백만원
· 유형자산	4,639	4	0.1	집행잔액 4백만원
· 무형자산	1,446	152	10.5	집행잔액 152백만원

* 자료 : 병무청

다. 집행실적 분석

- 2023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331억 900만 원으로, 이 중 3,074억 8,800만 원(92.3%)을 집행하였음. 예산집행 과정에서 전용액은 7억 8,200만 원, 불용액은 256억 2,100만 원(7.7%)이 발생하였음.
-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액 7억 8,200만 원의 내역은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억 3,800만 원
 - 사회복지무요원교육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임차료 2억 5,700만 원
 - 청년인턴 및 한시임기제 등 고용부담금 8,100만 원
 - 예산성과금 지급 600만 원임
- 불용액 256억 2,100만원의 내역은
 - 인건비 집행잔액 25억 6,100만 원
 - 운영비 및 여비 등 물건비 집행잔액 22억 9,900만 원
 - 이전지출 집행잔액 205억 1,300만 원
 - 자산취득 및 운용 집행잔액 2억 4,800만 원임.

3. 재무제표 분석

- 병무청의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전반의 자산·부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가. 총 괄

(단위: 백만원)

구분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A-B)	
				금액	비율
재 정 상태표	자 산	377,214	377,247	△33	△0.0 %
	부 채	53,694	19,607	34,087	173.9 %
	순 자 산	323,520	357,640	△34,120	△9.5 %
재 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8,650	28,519	131	0.5 %
	관리운영비	332,306	230,327	101,979	44.3 %
	비배분비용	-	-	-	-
	비배분수익	2,189	460	1,729	375.9 % ¹⁾
	재정운영순원가	358,767	258,386	100,381	38.8 %
순자산 변동표	기초순자산	357,640	359,705	△2,065	△0.6 %
	재정운영결과	358,767	258,386	100,381	38.8 %
	재원의조달및이전	324,907	258,297	66,610	25.8 %
	조정항목	△260	△1,977	1,717	86.8 %
	기말순자산	323,520	357,640	△34,120	△9.5 %

* 자료 : 병무청

- 1) 비배분수익 376%(1,729 백만원) 증가 사유 : 유형자산처분이익 211백만원 감소한 반면, 기타 수익(전기오류수정이익 등) 1,917백만원 증가, 경인청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 중 토지대장(공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현황면적)이 상이함을 확인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하였고 기타이자수익 등 23백만원 증가함에 기인함.

나. 재무제표 분석

- 2023년 병무청 자산은 3,772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0.0%)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53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억 8,700만원(173.9%)이 증가하였음.

자산의 감소는 일반유형자산 1억 3,2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 16억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무형자산 11억 3,200만원, 유동자산 등이 6억 3,500만원 감소함에 기인함.

부채의 증가는 장기차입부채가 29억 100만원 감소한 반면, 유동부채 53억 3,500만원, 장기충당부채 316억 5,3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함.

- 2023년 재정운영결과는 3,587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3억 8,100만원(38.8%) 증가하였음. 이는 프로그램순원가(286억 5,000만 원)에서 관리운영비(3,323억 600만 원)와 비배분비용(0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21억 8,900만 원)을 차감한 값임.

- 2023년 기말순자산은 3,23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1억 2,000만원(△9.5%) 감소하였음. 이는 기초순자산(3,576억 4,000만원)에서 당기 재정운영결과(3,587억 6,700만원)를 차감하고, 당기 재원의 조달 및 이전(3,249억 700만원)과 당기 조정항목(△2억 6,000만원)을 가산한 금액임.

III

검토의견

1. 세출

가. 총괄 개요

-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3,331억 900만원이며, 4개 프로그램 20개 세부사업에 3,074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256억 2,100만원을 불용함.

병무청의 예산 집행률은 92.3%로서 정부 전체 집행률(93.0%)²⁾과 유사한 수준이며, 불용률은 7.7%로서 최근 5년 불용 규모와 유사함.

- 병무청 예산은 일반회계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43.5%)이 일반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 실적 역시 최근 5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결산상 특이점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기 이전인 2019년 이전 병무청 예산 집행률(97.0%)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이는 전체 불용률의 80%에 가까운 금액(203억 9,600만원)이 사회복지 준비금 지원 사업 단일 항목에서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시 현실성 없는 목표치를 산정한 결과라 할 수 있음.

2) 일반회계 기준

[병무청 최근 10년간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집행율 (%)	98	96	96	96	97	95	90	90	89	92

- 병무청이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을 통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결산서 상에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고도화·정밀화 필요성, 특별사법경찰 수사력 제고 방안 마련,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 강화, 현역병 충원률 제고 방안 마련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병역판정검사 고도화 · 체계화 필요성 등

(1) 사업 개요

- 병역판정검사 사업(1131-301)은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최신 의료장비 적기 구입 등 필요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를 수행하는 한편,

병역면탈예방·단속 및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행위 차단, 확인신체검사 등 사전 병역면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을 통해 병역면탈 기도 행위를 엄정 대응 하기 위한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181억 7,4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97.3%인 176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2.7%인 4억 8,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병역판정검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병역판정검사	18,174	18,174	-	±67	18,174	17,692 (97.3%)	482 (2.7%)
- 병역판정검사	17,943	17,943	-	±67	17,943	17,464 (97.3%)	479 (2.7%)
- 병역면탈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231	231	-	-	231	228 (98.7%)	3 (1.3%)

* 자료 : 병무청

- 불용액은 4억 8,200만원으로 잠복결핵 위탁검사 낙찰차액³⁾ 4억 4,800만원,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3,400만원임.

3) 잠복결핵 위탁검사 낙찰차액 : 예산편성단가(16,000원)보다 계약단가(14,500원)가 낮게 형성

(2)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고도화·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

- 병역판정검사 사업은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는 사업임.
- 병역판정검사는 크게 신체검사, 심리검사로 구분되는데 신체검사는 질병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검사이고, 심리검사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군 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임.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시 검사 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임상심리사를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배치하여 검사 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 여부 및 병증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업무인력 현황]

(’23.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중점소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인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남	경기 북부
			1반	2반								
전담의사	22	2	2	2	2	2	2	2	2	2	2	2
임상심리사	51	4	5	5	4	5	5	5	5	5	3	5

* 자료 : 병무청

- 현재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및 학업·진로 등에 의한 스트레스 증가로 병역 의무 대상자인 20대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⁴⁾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질환 관련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시 내과, 외과 등 10개 검사 과목⁵⁾으로 분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분야는 신체 질환을 다루는 여타 검사 과목과는 다르게 객관적인 의료 자료를 통한 증상 및 중증 정도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이러한 점을 악용한 병역면탈 시도 행위가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⁶⁾임.
- 병무청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신체 등급 판정의 정확도 향상과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4단계 절차로 운영하고 있음.
- 1차 심리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성검사(271문항), 인지능력검사(89문항)를 실시함.

4) 우울한 20대, 우울증·불안장애 5년새 127%·86% 폭증(메디컬타임즈, 2022.6.24.)

[1020 정신건강] ① 희망 잃은 젊은 세대, 마음도 병든다.(연합뉴스, 2022.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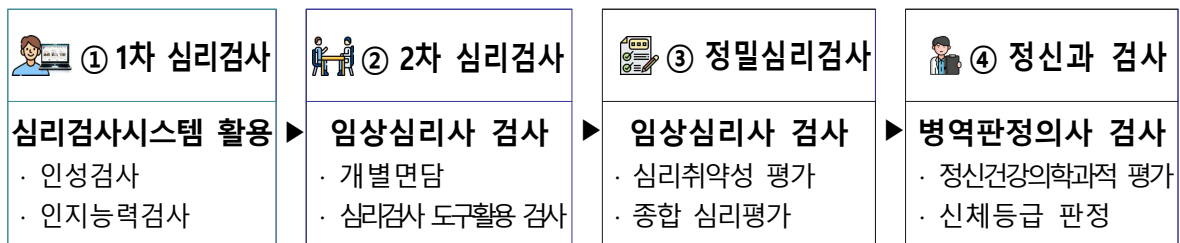
'정신질환자 56만명' 4년만에 42% 늘어...2030세대 환자 급증(뉴스핌, 2023.10.10.)

5) 병역판정검사 검사과목 : 수석, 내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일반·신경·심장혈관흉부외과, 치과, 성형·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6) 최근 5년 병역면탈 현황 순위 : 뇌전증위장(136) >정신질환위장(106)>고의체중 증·감량(79) 순

- 2차 심리검사는 1차 심리검사 결과 및 질병상태문진표(13문항)⁷⁾에서 추가적인 심리상태 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임상심리사가 개별 면담과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검사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함.
- 정신과 검사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1·2차 심리검사 결과 및 진단서, 의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면담·문진 검사 절차를 통해 신체등급을 판정함.
- 특히 지적능력 저하자, 심리취약자 등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검자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여 임상심리사가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신체 등급 판정에 반영하고 있음.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체계 및 절차]



* 자료 : 병무청

7) 1차 심사시 병행하여 실시하며, 정신건강의학과 6문항, 심리검사 7문항으로 구성

○ 3차(정밀심리검사를 거치는 경우 4차)에 걸친 정신질환 관련 병역
판정검사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구실로 병역을 면탈하고자 하는
행위⁸⁾는 그치지 않고 있는 반면,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 적합
으로 판정되어 입영한 병역 의무자 중 군 복무 시 정신질환·부적응
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을 때,

정신질환 관련 병역판정검사 체계 개선등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
하여 병역 의무 수행이 어려운 인원과 정신질환을 가장한 병역
면탈 시도자를 보다 정밀히 선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요청으로 심리취약 7급¹⁰⁾, 저지능자¹¹⁾
등에게 실시하고 있는 정밀심리검사의 직접 수행 비중의 제고

8)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탈행위 적발 현황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정신질환 위장	16	24	29	26	11
뇌전증 위장	136	-	-	-	-

9) 정신질환 사유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현황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정신질환 사유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인원	3,028	3,640	4,223	4,915	4,930

10) 심리취약 7급 : 정신질환(증상) 발생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 하에 부적응 문제
를 초래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특성 및 조건을 가진 대상으로, 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가 필요
하여 치료기간 부여를 위해 재신체검사(7급) 판정 받은 사람

11) 저지능자 : 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 등 낮은 지능 및 사회성 부족으로 일상생활 적응 상
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정밀심리검사는 2020년까지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21년부터 일부 정밀심리검사를 병무청에서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위탁 방식과 직접 수행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정밀심리검사 위탁 및 직접수행 실적 비교]

(단위: 명)

구분	계	정밀심리검사	
		위탁검사	자체검사
2023년	2,606	1,295	1,311
2022년	2,310	1,294	1,016
2021년	2,040	1,933	107

* 자료 :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정밀심리검사와는 다르게 병역 의무 수행 가능 여부 판단에 초점을 두는 정밀심리검사라는 점에서, 외부 위탁에 의한 정밀심리검사보다는 병무청 자체 정밀심리검사가 보다 정밀한 신체등급 판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또한, 외부 위탁 시 우려되는 병역면탈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로, 정밀심리검사 실시 범위를 현역병 이외 판정대상자(4급~6급 신체등급 판정 대상자) 전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역병 이외 판정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정신질환을 사유로 4급~6급 판정을 받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병역면탈 행위를 보다 면밀히 구분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임.

[4~6급 대상자 중 정신과 신체등급 판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병역판정검사 수검인원		238,604	248,361	254,361	282,167	323,763	315,698
병역판정 (4~6급)	전 체(A)	32,115	33,567	35,752	42,805	50,244	50,326
	정신과(B)	5,927	6,288	6,666	5,766	6,839	6,677
	비율(B/A)	18.5%	18.7%	18.6%	13.5%	13.6%	13.3%
	정밀심리검사 실적(C)	1,728	1,580	1,617	1,387	1,241	1,511
	비율(C/B)	29.1%	25.1%	24.3%	24.1%	18.1%	22.6%

* 자료 : 병무청

- 마지막으로, 외부 위탁 정밀심리검사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정밀심리검사를 병무청 자체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지방청 검사반¹²⁾별로 편제되어 있는 정밀심리검사 운영 조직을 권역화하여 각 권역별 정밀심리검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인원의 재배치 및 증원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밀심리검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입영판정검사 수행 능력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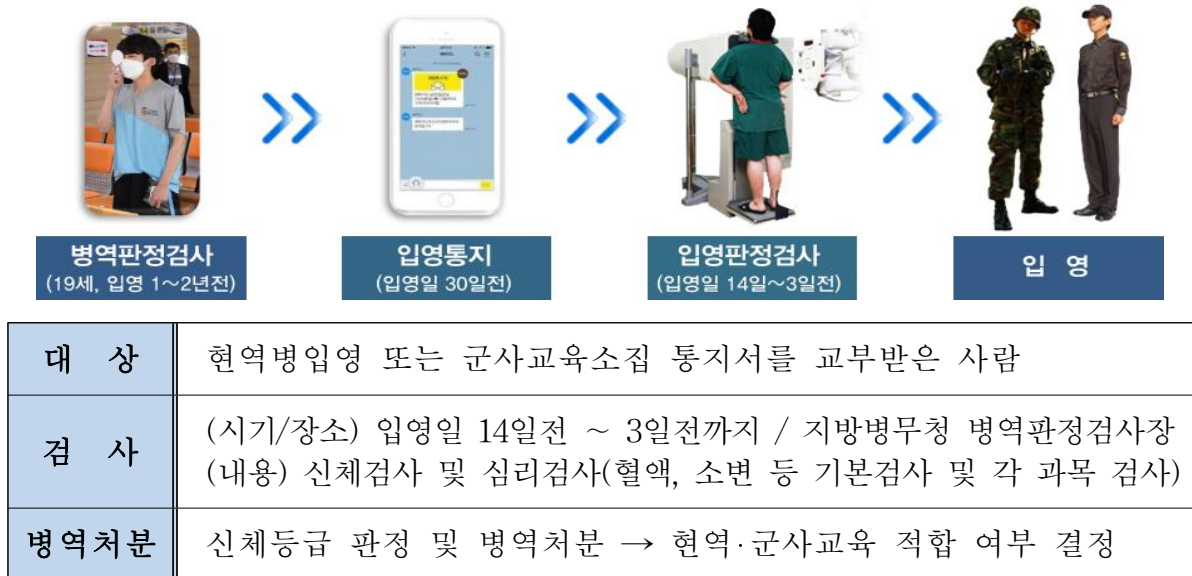
- 병무청은 2025년 7월 전면 시행 예정인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관련 시설의 확충,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병무청은 2021년 8월부터 병역 의무자 중 일부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영일 전에 입영판정검사(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병역판정검사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음.¹³⁾

12) 지방청 정밀심리검사 인력 현황(9명) : 9개 검사반별 1명, 경남청 미배치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인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남	경기 북부
	1반	2반								
9	1	1	1	1	1	1	1	1	0	1

13)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입영판정검사 절차도]



* 자료 : 병무청

-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전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한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군 부대에 따라 입영 후 귀가하는 귀가자의 비율이 상이하고 입영 후 귀가에 따른 병역 의무자의 불편¹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부대 입영 전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후 전국 10개 병역판정검사장을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입영판정검사 실시 대상 부대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4) 군 부대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후 재입영까지 평균 3개월의 대기기간이 소요되어 학업·취업 복귀가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입영판정검사 연도별 수행 계획]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2026년
대 상 부 대	2작사	2작사 + 지작사 일부(舊 1군)	2작사 + 지작사 전체(舊 1, 3군)		전면 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대 상 인 원	1.3만명	3.7만명	8.7만명	8.9만명	17.1만명	23.7만명

* 자료 : 병무청

- 현재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와 각 군 입영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 병행 수행 체계를 2025년 7월부터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할 경우, 연간 약 17.7만명¹⁵⁾ 이상의 추가 검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입영판정검사 전면 도입에 따른 신체검사 추가 수요 예측 현황]

(단위: 만명)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검사 대상	32.2	41.3	49.9	49.1	48.9
'24년 대비 증가 인원	-	9.1 ↑	17.7 ↑	16.9 ↑	16.7 ↑
%	-	28.3 ↑	54.9 ↑	52.5 ↑	51.9 ↑
검사반별 평균 검사인원	3.2	3.9	4.5	4.5	4.4
%	-	21.9 ↑	40.6 ↑	40.6 ↑	37.5 ↑

* 자료 : 병무청

15) 2024년 평균 수검인원에 2026년 전면 시행시 발생하는 추가 검사 인원임.

- 병무청은 현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수행을 위하여 서울 지방병무청 등 10개의 검사반을 운영¹⁶⁾중인데 이는 주로 병역판정검사 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입영판정검사 전면 실시에 따라 검사 대상 인원이 2024년 현재 대비 연간 약 54.9% 이상 증가할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무청은 경인지방병무청에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2025년 6월 개소를 목표로 건설 중이지만, 충청지역 이하 남부권 등에도 검사 시설 추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입영판정검사 수행 시설 확충 외에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료기술요원, 행정요원 등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¹⁷⁾ 순수 인력 증원 방안 이외에도 기관 자체 업무 재배치를 통해 입영판정검사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병역판정검사장의 연간 검사기간¹⁸⁾을 확대하며, 수검 인원을 각 검사장에 적정 배분하는 등 별도의 자구책 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6) [참고자료 1] 2023년 지방청 병역판정검사 운영 현황 참고

17) 병무청은 추가로 설치되는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13인 및 검사장 운영 필수 인력 22명에 대하여 인력 증원을 요구하였으며, 유관기관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음.

18) 현행 병역판정검사 기간 : 매년 2월 1일~12월 6일(휴무달 : 12월, 1월)

[주요 병역판정검사장 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행정요원						의료기술요원			
		병역 판정 관	병역 판정 보좌 관	적성 분류 관	심리 검사 사무 원	의무 사무 원	일반 사무 원	방사 선사	임상 병리 사	임상 심리 사	혈압 측정
서울1반	13	1	1	1	2	1	4	2	4	5	1
서울2반	13	1	1	1	2	1	4	3	4	5	1
부산울산	13	1	1	1	2	1	4	3	4	4	1
대구경북	13	1	1	1	1	1	4	2	4	5	1
경인	13	1	1	1	2	1	5	3	4	5	1
인천	13	1	1	1	2	1	5	3	4	5	1
경기북부	13	1	1	1	2	1	3	3	4	5	1
광주전남	13	1	1	1	2	1	3	3	4	5	1
대전충남	13	1	1	1	2	1	3	3	4	5	1
경남	13	1	1	1	2	1	3	3	3	3	1

* 자료 : 병무청

다. 병역면탈 행위 수사 및 처벌 강화

(1) 사업 개요

- 병역면탈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사업(1131-301)은 병역면탈 예방·단속 및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행위 차단, 확인신체검사 등 사전 병역면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을 통해 병역면탈 기도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2억 3,100만원이며, 이중 98.7%인 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불용하였음.

[2023년도 병역면탈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사업 예산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병역면탈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231	228	98.7%

(2) 과학적·체계적인 병역면탈 행위 단속 수사 기법 도입 필요

- 병무청은 2012년부터 병역면탈 범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대부분 수작업 분석과 제보에 의한 수사에 의존¹⁹⁾하고 있어 병역면탈 행위 단속에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19) 제보에 의한 적발인원은 '23.12.31. 기준 적발인원(421명)의 85.7%(361명) 차지, 최근 뇌전증 위장 면탈사례처럼 다수가 연루된 병역면탈 범죄는 제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음.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행위의 단속 강화 및 예방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기법의 도입 및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24. 5.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본 청	광역수사청			현장청
			서울청	경인청	경북청	
2024년	60	22*	10*	8	9	11
2023년	40	11*	9*	-	8	12**

- * 본청,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 전문분석관 각 1명 반영
- ** 2023년 경인청은 현장청에 포함, 2024년부터 광역수사청으로 개편
-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는 ①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②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에서,

2024년 7월 17일 ①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 ②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해당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수사,

③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수사, ④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를 게시·유통한 경우에 대한 수사까지 직무 범위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음.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현황]

기 준	확 대
• 기피·감면 목적 신체손상·숙임수(제86조) • 대리수검(제87조제1항)	• 기피·감면목적 도망·행불 및 신체손상·숙임수(제86조) • 대리수검(제87조제1항) • 기피·감면 등 관련정보의 게시·유통자(제87조의2) • 신체검사 및 징·소집 등 기피자(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 제88조제1항제4호는 제외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본청에 사이버 조사과를 신설하고 지방청에 수사 인력을 보강(특별사법경찰관 인원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병역 면탈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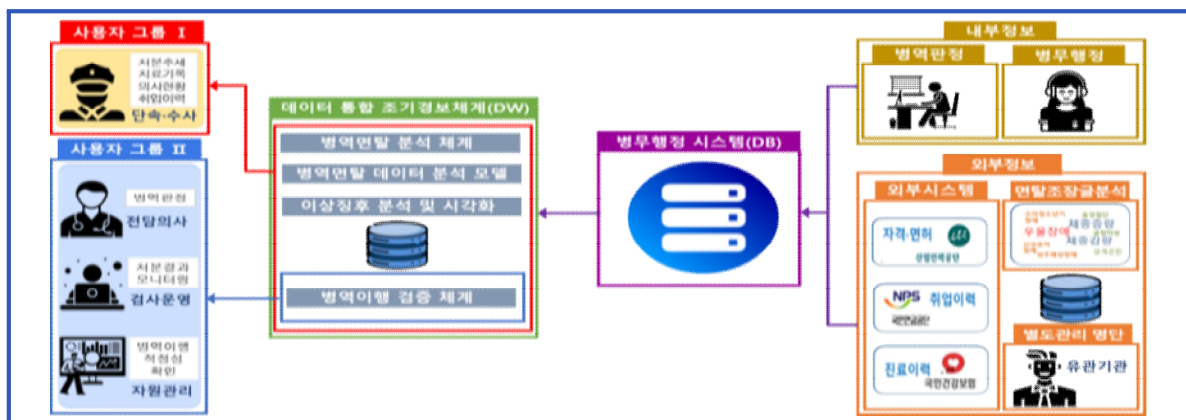
[특별사법경찰 인원 증원에 따른 조직 개편 현황]

구분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본청	지방청	본청	지방청
조직	1과 (병역조사과)	2개 광역청 (서울, 경북)	2과 (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	3개 광역청 (서울, 경북, 경인)
특사경 인원	11명	29명	22명 * 병역조사과 11, 사이버조사과 11	38명 * 광역청 27, 현장청 11
광역청 관할구역	▶ 중부권 : 서울청, 강원청, 강원영동청, 대전충남청, 충북청 ▶ 경인권 : 경인청, 인천청, 경기북부청 ▶ 남부권 : 대구경북청, 부산울산청, 경남청, 광주전남청, 전북청, 제주청			

* 자료 : 병무청

- 또한, 병무청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시스템’²⁰⁾을 구축(2024년)하여 병역면탈 행위의 예방·단속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시스템 체계도]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지금까지 병역면탈 행위 등을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자체 확보한 병역관정검사 자료 등을 활용한 병역 정보에 대한 수작업 분석과 제보에 의한 수사에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

20) 병역이행 단계별로 병역면탈 이상 징후 분석, 질환 발생 통계분석, 병역면탈 고위험 대상자 분류 등 병역면탈 시도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탐지하는 통합적인 체계

병역면탈 범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함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 및 제보에 의한 수사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병역면탈 범죄 단서별 송치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421	169	48	60	69	75
기획수사 ²¹⁾	52	13	10	6	7	16
확인신검	8	1	0	0	3	4
제보 등	361	155	38	54	59	55

* 제보 등 : 제보, 면탈의심 언론보도 관련 수사 / 확인신검 : 자격면허취득·계속치료대상

* 자료 : 병무청

○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제공하는 병역면탈 단서 포착, 병역면탈 시도 행위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병무청이 구축 중인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시스템은 내부자료를 DB화하고 기존 수작업 분석을 시스템화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병역면탈 범죄 적발이 제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21) 기획수사 : 신체등급 4~6급 판정자 중 특정 질병, 특정 의사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 이력,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수사

이 외에도 범죄 모의 단계에서의 단속률을 높이고 병역면탈 행위의 사전 예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및 자료 공조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증원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사 기법 전수 및 수사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병역면탈 행위자 처벌 수준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병역면탈 행위로 기소된 자들 대부분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바, 병역면탈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현행 「병역법」에서는 병역면탈 행위와 관련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3년 기준 병역면탈 행위로 169명이 기소되어 이 중 12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음.

[병역면탈 범죄 중 유죄 판결 세부 처분 현황]

(송치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징역(실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계	300	7	234	55	4
2023년	122	-	119	2	1
2022년	27	-	17	8	2
2021년	40	2	20	18	-
2020년	51	3	33	15	-
2019년	60	2	45	12	1

* 자료 : 병무청

병역면탈 범죄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5% 미만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이는 형량 결정 시 대부분의 범죄자가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반이고 초범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병역면탈행위 내용 및 처벌 기준]

구 분	내 용	벌 칙	법조항
병역면탈	병역을 기피·감면 목적 도망·행불자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86조
대리수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검사받은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제87조 제1항
병역판정검사 기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	제87조 제3항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86조 및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7조의2
징·소집 기피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제88조 제1항

* 자료 : 병무청

- 병역면탈 행위가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고 병역 이행 기피 현상을 조장하는 등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²⁾

라. 산업지원인력 사업 운영 · 관리 강화

(1) 사업 개요

- 산업지원인력 사업(1434-309)은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연구·생산 인력을 지원하여 국가산업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3,100만원으로, 이 중 3억 2,300만원 (97.6%)을 집행하였고, 800만원(2.4%)이 불용되었음.

[산업지원인력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산업지원인력	331	331	-	-	331	323 (97.6%)	8 (2.4%)

22) 병무청은 병역면탈 관련 범죄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을 요청(2023년 5월)하였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 심의(2023년 6월) 결과 병역면탈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양형 기준 설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양형 기준 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병역지정업체 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 실태조사 철저 필요

- 병역지정업체 관리현황 및 산업지원인력의 복무상황 실태조사 결과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 인력 등의 제약으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 위반 업체 및 복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이고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방식의 개선, 인력 증원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병무청에서 현재(2023년 12월 기준) 관리 중인 병역지정업체는 총 8,707개이며, 연간 병역지정업체 배정 인원은 12,500명, 누적 복무 인원은 21,564명 수준임.

[연도별 병역지정업체 관리 현황 및 배정·복무인원 현황]

(단위: 개/명)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관리업체	8,707	10,417	10,938	11,107	11,022
배정인원	12,500	13,000	15,500	15,500	15,500
복무인원	21,564	25,522	28,790	31,722	34,715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는지를 파악하고, 병역지정업체가 선정 요건에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복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의무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하고 있음.²³⁾

- 실태조사는 연 1회 모든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위반업체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특정(취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정기 실태조사는 약 6,000회 실시하였고, 특별 실태조사는 약 670회 정도 실시하는 등 약 6,700회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연도별 병역지정업체 현장 실태조사 실적 현황]

(단위: 회)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6,739	7,386	4,271	6,592	8,256
정기 실태조사	6,061	6,147	3,540	5,711	7,653
특별 실태조사	678	1,239	731	881	603

* 2020~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조사를 일부 온라인 조사로 대체하였음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약 75개 정도의 업체가 의무 복무자인 산업기능요원 등을 지정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타 업체

23) 「병역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②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또는 타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지시하거나, 의무 복무자 및 병역지정업체의 신상·기업규모 변동 사항 미통보 등의 사유로 고발 등 행정조치²⁴⁾를 받고 있으며,

매년 약 80명 정도의 전문연구요원 등 의무 복무자 또한 무단 결근 등 복무 규정 위반 사유로 편입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

[연도별 병역지정업체 및 의무 복무자 규정 위반 행정조치 현황]

(단위: 개/명)

연 도	업 체				의 무 자			
	계	고발	경고	주의	계	편입취소	연장복무	경고등
2023년	75	17	25	33	88	4	54	30
2022년	71	12	22	37	73	2	42	29
2021년	75	14	32	29	139	3	52	84
2020년	54	7	16	31	63	7	31	25
2019년	79	4	20	55	64	1	44	19

* 자료 : 병무청

- 매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고발, 편입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확인 및 행정 지도를 통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4) 행정조치 종류 및 조치 내용 :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 경고, 주의를 받은 업체는 당해연도 배정 인원 회수 및 다음 해부터 인원 배정 제한 (고발 3년, 경고 2년, 주의 1년)

-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및 의무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본청 및 14개 지방청·지청에 총 44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여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방청별 실태조사 담당자 인원 배치 현황]

(’24. 3.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인원	44	5	3	6	3	4	6	3	2	2	4	1	2	2	1

* 자료 : 병무청

- 2023년 기준으로 현장 방문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병역지정업체가 5천여개²⁵⁾이고 정기·특별 실태조사 실적이 약 6,700건임을 감안할 때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수는 약 113개 업체, 1인당 수행해야 하는 현장 실태조사는 약 152회로 연간 근무일수가 240일 정도임을 고려할 때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체수 및 실태조사 건수가 과도한 수준으로 보임.
- 병무청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 인력의 세부적인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서울지방병무청 5명, 경인지방병무청 3명, 인천병무지청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방청·지청 근무자 34인은 실태조사 담당자가 실태조사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 등 다른 산업지원업무도

25) 현장조사 대상(5,000여개) : 병역지정업체 약 9,000개 중 전년도 복무관리 우수업체(30%) 및 복무인원 없는 업체는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인력 제약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병무청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수행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담당자
및 의무 복무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성실 관리·복무를
유도하고, 법령 위반 업체 및 의무 복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현행 실태조사 대상, 방식 등을 분석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실태조사 인원 증원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마.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사업 연계 검토

(1) 사업 개요

- 현역병모집 사업(1232-303)은 징집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각 군의
주요 군사특기를 개인의 자격·전공·면허 등 적성과 연계하여 선발
하고,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영 전,
복무 중, 전역 후를 아우르는 병역진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35억 8,300만원이며, 이중 92.7%인 33억
2,000만원이 집행됨.
 -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인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보증금 없는 임대차 계약(1억원), 수원·인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공사비 낙찰차액(5,200만원) 등임.

[현역병모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현역병모집	3,583	3,583	-	±129	3,583	3,320 (92.7%)	263 (7.3%)
- 현역병모집	556	556	-	±69	487	487 (100.0%)	-
- 병역진로설계	3,027	3,027	-	±60	3,096	2,833 (93.6%)	263 (6.4%)

(2) 취업맞춤특기병 사업과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 연계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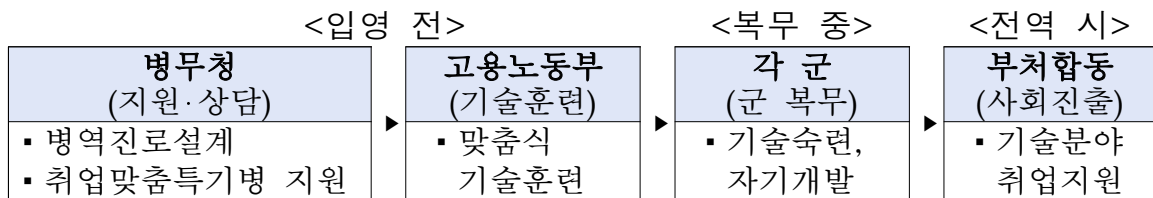
○ 병역진로설계 사업과 취업맞춤특기병 사업은 도입 배경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업 목적, 사업 운영 방식, 사업 수혜 대상 및 고용노동부, 각 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형태 등이 유사함²⁶⁾을 고려했을 때 사업 연계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두 사업 모두 병역의무자가 전공·적성 등에 맞는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역 후 해당 군 복무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연계시켜 군 복무가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자기 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²⁶⁾ [참고자료 5] 취업맞춤특기병 및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사업 실적

- ‘취업맞춤특기병 사업’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통해 입영 전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입영 후 관련 분야 기술병으로 복무한 뒤 전역 후에는 연관 산업 분야로의 취업 알선 등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4년 육군에 처음 도입 후 2016년에는 해·공군, 2018년에는 해병대까지 모집 범위를 확대하였고, 사업 시행 초기 고졸 이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폴리텍대학·학점은행을 통한 전문학사 및 방송대 재학·졸업자, 직업계고 재학자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대상을 확대하였음.

[취업맞춤특기병 사업 추진 체계도]



* 자료 : 병무청

-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입영 전 전문상담관이 맞춤형 병역진로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의 전공·경력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하고, 군 복무시 추천받은 군 특기 분야에서 개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역 후에는 군 경력을 바탕으로 복학·취업 등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체계도]



* 자료 : 병무청

- 동 사업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직업 계고 등에 방문하여 병역진로상담 등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도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로 구성됨.
- 2018년 ‘찾아가는 입대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시범 운영한 이후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내에 수도권 관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지역, 경기지역 등에 총 8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²⁷⁾ 중임.

27) 2024년 울산, 창원, 의정부에 3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2025년 청주, 전주에 추가 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총 13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참고자료 4]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현황 참조

[연도별 취업맞춤특기병/병역진로설계 사업 실적]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인원	1,615	4,693	16,310	32,287	48,734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인원	2,716	3,286	5,101	5,098	5,116

* 자료 : 병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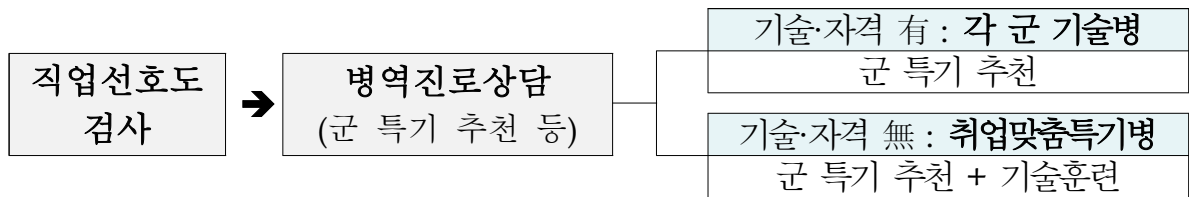
○ 취업맞춤특기병 사업 대상은 고졸 이하, 폴리텍·방송대 재학·졸업자, 직업계고·전문대학 재학·졸업자인 반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대상자는 모든 병역의무자이므로 취업맞춤특기병 대상자가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두 사업 모두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전문상담관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적합한 군 특기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으며,²⁸⁾

두 사업 모두 군 복무 시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일선 군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군 전역 후 효과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28) 취업맞춤특기병의 경우 전문상담관의 상담 후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상담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기술훈련 과정을 거치나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전문상담관의 군 특기 추천에 그치고 별도의 맞춤형 기술훈련 과정은 거치지 않음.

[취업맞춤특기병/병역진로설계 사업 비교]



구분	취업맞춤특기병('14년~)	병역진로설계('19년~)
취지	취업이 어려운 고졸이하 병역이행 부담 완화 및 청년 취업 활성화	모든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과 진로를 연계, 국가 인적자원으로 육성
내용	- 군 지원절차 상담 및 입영 전 고용부 기술훈련 추천 - 관련 분야 복무 및 전역 후 군 경력 활용 관련 분야 취업	- 직업선호도검사 및 자격·전공·흥미 등 고려 군 특기 추천 - 군 생활 체험, 적응 교육 - 관련분야 복무 및 취업정보 제공
방식	- 방문 상담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 -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 온라인 서비스

* 자료 : 병무청

- 두 사업 간 유사성과 서비스 이용자 증가세 등을 감안하였을 때 두 사업 성격이 일부 차이는 있으나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 운영, 체계적인 사업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바. 현역병 충원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개요

- 현역병입영 사업(1232-305)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자원의 적정 충원을 통해, 안정적인 병력 운영 지원 및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 국외

병역의무자 대상 병역제도 홍보 등 자발적인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 및 이들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3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98.1%인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인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현역병입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잔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현역병입영 사업	377	-	-	-	377	370 (98.1%)	7 (1.9%)
- 현역병입영	261	-	-	-	263	258 (98.1%)	5 (1.9%)
- 국외자원관리	116	-	-	-	114	112 (98.2%)	2 (1.8%)

(2) 현역병 충원을 제고 및 월별 균형 충원 필요

- 2020년 이후 현역병 징집 및 모집 충원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역자원의 적기 충원이 병무청의 주요 임무임을 고려할 때 현역병 징집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시기별 충원율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현역병 징집·모집 총원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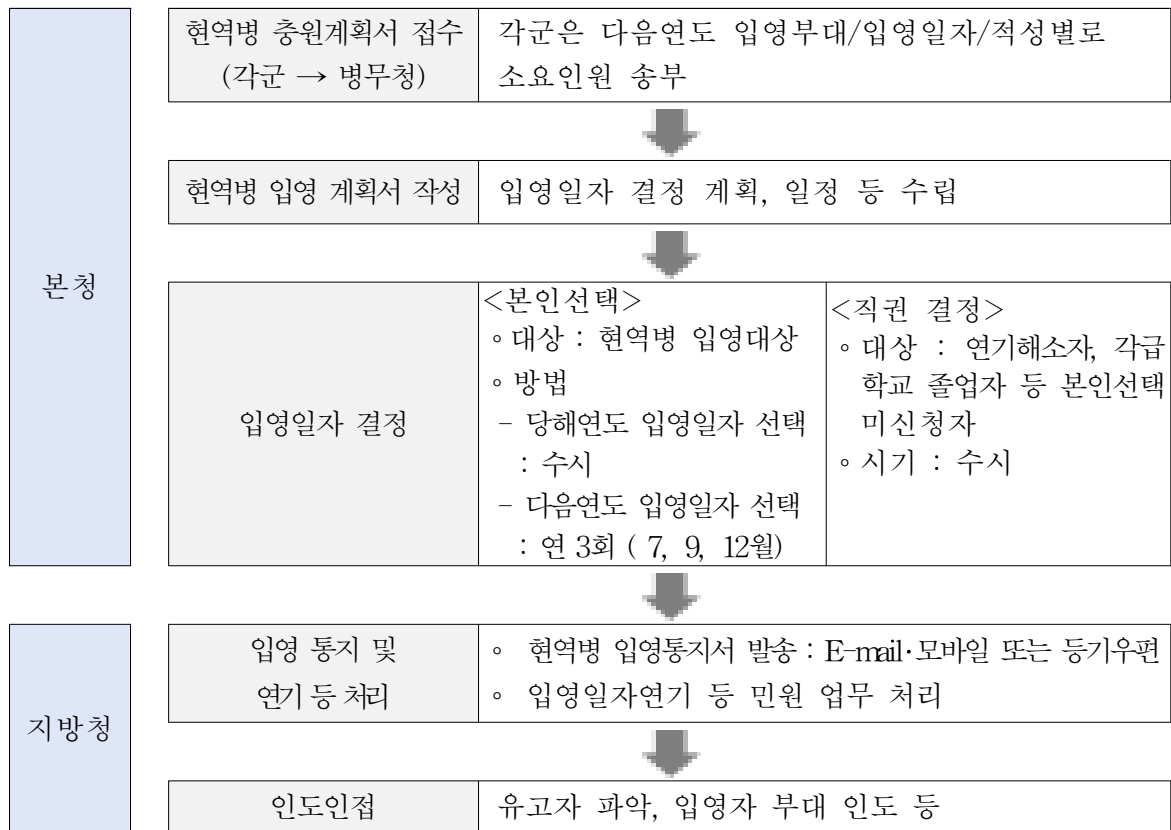
구분	징 집				모 집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계 획	96,327	101,369	101,986	115,709	117,583	113,164	121,411	130,803
입 영	85,324	90,358	97,649	109,371	101,864	95,843	118,105	126,775
%	88.6	89.1	95.7	94.5	86.6	84.7	97.3	96.9

* 자료 : 병무청

○ 현역병 입영 사업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적정 충원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운영 지원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 현역병 입영신청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군과 병역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입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 현역병 입영은 대부분 징집에 의한 입영이나, 징집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주요 군사특기의 병 충원을 위한 모집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현역병 입영 사업 집행 절차 모식도]



* 자료 : 병무청

- 2021년 이후 징집 및 모집 충원률이 매년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충원 가능한 병역자원이 줄어들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역병 충원율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는 최근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 사업의 제약 요인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대비 가능한 제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병무청은 병력 동원 가능 인구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역병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역병 충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로 충원율이 시기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

[연도별 월간 현역병 충원율]

(단위: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87.5	95.2	100.7	100.8	100.4	98.0	93.8	93.0	90.8	85.3	68.5	43.6	66.8
2022년	86.8	95.5	91.2	90.1	101.0	98.8	94.2	95.1	91.4	90.9	72.8	46.0	67.3
2021년	96.6	99.0	96.8	98.3	97.3	98.7	97.2	100.3	101.3	100.3	97.6	92.1	76.9
2020년	95.8	97.6	98.1	100.1	99.8	98.6	96.1	98.5	99.1	96.8	93.1	88.0	83.1

* 자료 : 병무청

- 현역병 월별 충원율 통계를 살펴보면 1분기부터 3분기(1월~9월)까지는 월에 따라 충원율이 100%를 상회하는 월도 있으며, 대부분이 90% 중반 내외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나, 4분기(10월~12월)의 경우 충원율이 낮게는 40% 초반에 그치고 있어 4분기 충원율이 나머지 1~3분기의 충원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병무청은 이러한 분기별 충원율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자의 약 80%가 대학생으로 학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반기 입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휴한기·휴서기에 입영을 기피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역병 필요 인원은 연간 비교적 일정한 반면, 하반기에 군에서 요구하는 필요 병력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군 전투력 유지 등 군 부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병무청은 충원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충원 인원 부족이 예상될 시 입영 대상자 추가 모집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부 및 각 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충원율이 저조한 모집 선호 특기 4분기 소요 확대, 병역의무자 학사일정을 고려한 입영일정 조정²⁹⁾, 휴가 활용을 통한 미복귀 전역³⁰⁾ 등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집행 부진

(1) 사업 개요

-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7135-314)은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사회복지요원의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장·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원하고,

29) 병역의무자 학사일정 고려한 12월 입영일정 조정 : 1,2주차 →3,4주차

30) 휴가 활용을 통한 미복귀 전역 : 전역 전 휴가 사용 후 부대 복귀 없이 전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및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등을 지원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023년도 예산현액 1,207억원 중 83.1%인 1,002억원을 집행하고 204억원을 불용하였음.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병역의무자 지원	120,480	-	-	+257	120,737	100,283 (83.1%)	20,454 (16.9%)
-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1,338	-	-	-	1,338	1,222 (91.3%)	116 (8.7%)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86,557	-	-	-	86,557	66,161 (76.4%)	20,396 (23.6%)
- 의무자여비 등	32,585	-	-	+257	32,842	32,900 (100.2%)	-

* 자료 : 병무청

(2) 사회복귀준비금 예산 과다 불용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865억 5,700만원이며, 이중 661억 6,100만원(76.4%)을 집행하고 203억 9,600만원(23.6%)를 불용 처리함.

동 사업의 불용액은 병무청 전체 불용액 256억 2,100만원의 80%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동 사업 집행 부진이 병무청 예산 집행 실적 부진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이 발생한 원인은 예산 편성 당시 과도한 기준 설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병무청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의 소집해제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사업’과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정부가 1%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 납입 원리금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는 원리금의 33%, 2023년도는 원리금의 71%, 2024년 이후에는 원금의 100%를 국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임.³¹⁾

[사회복지요원 보수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 비율]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보수(월액, 병장 기준)	67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적금 납입 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원금의) 100%	(원금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자료 : 병무청

31) 장병내일준비적금 1%이자지원 및 사회복귀준비금 재정지원은 2022년부터 실시하였음.

○ 사회복지준비금의 2023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소집 해제 예상인원 31,823명, 적금 가입율 77.45%로 예상하고, 1인당 평균 사회복지지원금 지급 예상액을 3,511천원으로 보아 총 866억원을 편성하였으나,³²⁾

사회복지준비금의 2023년 예산 집행내역은 2023년 소집해제 인원이 33,943명, 적금 가입율 74.9%, 1인당 평균 사회복지지원금 2,601천원으로 총 662억원을 집행됨.³³⁾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사회복지준비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비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1,338	1,222	91.3	
사회복지준비금 지원	86,557	66,161	76.4	

* 자료 : 병무청

○ 예산 집행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2023년 예산 편성시 1인당 평균 사회복지준비금 지급 금액을 3,511천원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예산 집행 결과 1인당 평균 사회복지준비금 지급 금액이 2,601천원으로 1인당 지급단가가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32) 사회복지준비금 예산 편성 산식 : 소집해제 예상인원(31,823명) × 예상 적금가입율(77.45%) × 1인당 평균 사회복지준비금 지급 예상액(3,511천원)

33) 사회복지준비금 집행 내역 : 소집해제 인원(33,943명) × 적금가입율(74.9%) × 1인당 평균 사회복지준비금 지급액(2,601천원)

이러한 추계 오류는 2023년 예산안 편성의 기초 자료인 1인당 사회복지준비금 예상 지급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① 적금 납입 기간을 소집 즉시 가입하고 중도해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 복무기간인 21개월로 설정하였고, ② 납입 금액 또한 법정 납입 최대 한도인 월 4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가입 현황은 60% 초·중반에 불과하고 평균 납입 금액도 36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편성된 예산과 집행액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현황(전체 복무자 대상)]

(단위: %)

구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입률	51.8	56.7	62.3	64.5	66.6	67.2	69.2	70.7	71.1	73.3	73.8	74.7
구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입률	80.3	76.8	79.9	80.6	80.7	83.2	83.6	83.7	85.5	85.8	85.4	86.7

* 자료 : 병무청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금액 현황(전체 복무자 대상)]

(단위: 만원)

구분	'22.1월	'22.8월	'23.1월	'23.8월	'24.1월	'24.3월
1인당 평균 가입금액	34.5	36.1	36.5	37.2	37.4	37.5

* 자료 : 병무청

- 동 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 현상은 사업 초기인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부터 예상되어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동일한 요인으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사회복귀준비금 예산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액	30,301	86,557
집행액	11,673	66,161
집행률(%)	38.5	76.4

* 자료 : 병무청

- 향후 병무청은 예산 과다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가입률, 가입금액, 가입기간 등 예산 추계에 필요한 추정치를 실제 통계 데이터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 병무행정정보화 관련

(1) 사업 개요

- 병무행정정보화 사업(7138-501)은 병무행정 전반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수행체계 유지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과 보안·통신 등 정보화 인프라의 지속 고도화를 통해 상시 안정적인 병역자원 선발·충원 및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정보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023년도 예산현액 8,872백만원 중 95.8%인 8,502백만원을 집행하고 370백만원을 불용하였음.

[병무행정정보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병무행정정보화	8,872	-	-	-	8,872	8,502 (95.8%)	370 (4.2%)
- 연구용역비	1,364	-	-	-	1,364	1,328 (97.4%)	36 (2.6%)
- 시스템 운영 제반비용	6,600	-	-	-	6,600	6,266 (94.9%)	334 (5.1%)
- 장비 및 SW 구입비	908	-	-	-	908	907 (100%)	- (0%)

* 자료 : 병무청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보안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병무청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영역에서 활발히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매년 약 25만명 규모의 19세 병역 의무자와 관련한 약 700만건의 병역의무자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 기록 데이터를 생산·보유하고 있음.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실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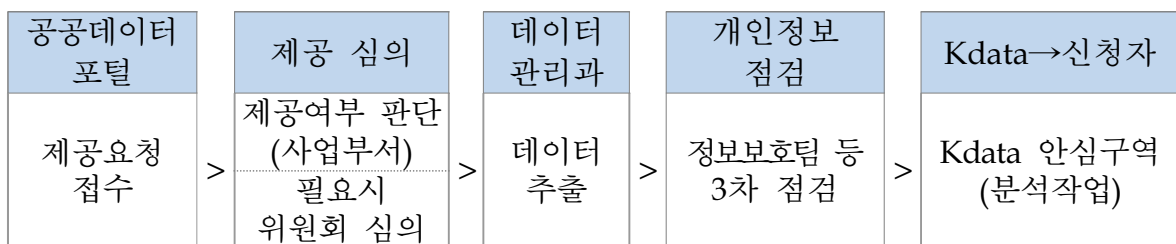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누적인원수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병역판정검사	1,363,769	241,714	251,038	256,755	287,162	327,100
입영판정검사	136,917	86,637	37,459	12,821	-	-

* 자료 : 병무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 동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 기록 등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2023년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³⁴⁾

결과 우수 등급(89.7점)을 받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이나, 병무청 보유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병무청 보유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실적]

제공시기	제공기관	목 적	건 수
'24. 1월	0000병원	흉곽기형과 성장과의 상관관계 분석	400만
'24. 1월	00병원	잠복결핵치료의 효과에 대한 분석	160만
'23. 10월	000병원	간염 역학데이터 분석, 백신개발 연구	600만
'23. 1월	000병원	연령증가에 따른 건강기록 변화에 대한 연구	600만
'22. 10월	000병원	성인 남성 비만을 변화에 대한 연구	300만
'22. 1월	000병원	잠복결핵 유병을 조사	25만

* 자료 : 병무청

- 현재 병무청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수요처를 살펴보면 대학 병원 등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는데,³⁵⁾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 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 기록 데이터의 가치 및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협회 등에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³⁶⁾

34)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 16개 세부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35) 이에 대해 병무청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의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 기록 데이터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36) 실제로 병무청은 2023년 7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 기록 데이터에 대

- 또한, 민간분야에서 병무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가공·처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품질 데이터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수요처의 효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하여 전담조직인 정보보호팀을 운영중이며 3단계 방어체계³⁷⁾를 구축하는 등 나름의 정보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우리나라 20대 남성 대다수의 의료 기록이라는 점에서, 유출 시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해킹 시도 및 그에 따른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병무청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보안 관리 활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등 11개 의료기관 및 제약·의료·보험 업계 등 관련 산업 기관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례가 있음.

37) - 1단계 :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시스템

- 2단계 : 방화벽 등 각종 보안장비를 운영하는 보안시스템

- 3단계 :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보안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병무청 유형별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24.6월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계	7,121	730	1,071	1,293	1,986	2,041
정보유출시도	1,036	116	169	258	193	300
정보수집	937	170	216	104	172	275
바이러스	329	19	40	72	115	83
시스템권한획득	3,894	269	502	654	1,325	1,144
서비스거부	20	1	5	4	2	8
비인가시도	542	117	83	150	123	69
기타	363	38	56	51	56	162

* 자료 : 병무청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참고자료 1] 2023년 지방청 병역판정검사 운영 현황

지방청별		검사기간	1일평균 수검인원	이동 여부	비 고 (검사준비기간)
계		'23. 2. 1. ~ 12. 22(1,997일)	최다 1,603명, 최저 1,574명 (검사반별 127명)		
서울청	1반	'23. 2. 1. ~ 12.22.(203일)	130	연간	
	2반	'23. 2. 1. ~ 12. 22.(203일)	132	연간	
부산청		'23. 2. 1. ~ 12. 22.(203일)	110	연간	
경북청		'23. 2. 1. ~ 12. 22.(203일)	120	연간	
경인청		'23. 2. 1. ~ 12. 22.(203일)	150	연간	
인천청		'23. 2. 1. ~ 12. 22.(203일)	131	연간	
전남청		'23. 4.14. ~ 7.26.(68일) 9.25. ~ 2.22.(58일)	126	이동	7.27.~7.28, 9.21.~9.22.
전북청		'23. 2. 1. ~ 4. 5.(43일) 8. 3. ~ 9.20.(30일)	124	이동	
충남청		'23. 2. 1. ~ 4.21.(49일) 5.17. ~ 10.11.(90일) 11. 1. ~ 12.22.(36일)	123	이동	4.24~4.25, 5.15.~5.16, 10.12~10.13, 10.30~10.31.
영동청		'23. 4.26. ~ 5.12.(10일) 10.16. ~ 10.27.(10일)	103	이동	

지방청별	검사기간	1일평균 예상인원	이동 여부	비 고 (검사준비기간)
경남청	'23. 2. 1. ~ 3.10.(26일) 5.31. ~ 9. 1.(58일) 11.13. ~ 12.22.(28일)	119	이동	3.13.~3.14, 4.17.~4.18, 5.29.~5.30, 9.4.~9.5. 9.21.~9.22, 11.9.~11.10.
충북청	'23. 4.19. ~ 5.25.(24일) 9.25. ~ 11.8.(28일)	118	이동	
제주청	'23. 3.15. ~ 4. 5.(15일) 9. 6. ~ 9.20.(11일)	103	이동	
북부청	'23. 2. 1. ~ 5.17.(64일) 6.26. ~ 9. 8.(47일) 10.10. ~ 12.22.(52일)	139	이동	5.18.~5.19, 6.22.~6.23. 9.11.~9.12, 10.5.~10.6.
강원청	'23. 5. 22. ~ 6.21.(20일) 9.13. ~ 10.4.(12일)	119	이동	
중검소	'23. 2.27. ~ 2.29.(191일)	38		

* 47.~13(신규 전담의사 교육), 7.25~29(호서기 휴무, 검사장비 집중 정비) 병역판정검사 제외

[참고자료 2] 병역판정검사 세부 검사항목

구 분(분류)		검 사 항 목	
기본 검사	심리검사(1종)	인성검사(271문항), 인지능력검사(89문항)	
	병리검사(30종)	HIV검사(1종)	HIV
		간염검사(2종)	HBsAg(B형), Anti-HCV(C형)
		간기능검사(3종)	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3종)	BUN, Creatinine, 신사구체여과율
		혈청단백검사(1종)	Albumin
		고지혈증검사(3종)	Cholesterol, T·G, HDLCholesterol
		혈당검사(1종)	Glucose
		혈구검사(6종)	RBC, WBC, Hb, Hct, PLT, Diff.C
		소변검사(10종)	Glucose, Protein, Occult Blood, PH, Keton, Bilirubin, Urobilinogen, WBC, NIT, SG
	방사선(1종)	흉부 방사선 촬영- 폐결핵	
	일반부위(3종)	신장, 체중-BMI	
		시력, 색각	
혈압측정(이완, 수축)			
각 과별 검사 (9과목)	안과, 피부·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정형·성형외과, 일반·흉부·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내과, 치과		

[참고자료 3] 병역지정업체 대상기관 및 선정기준

○ 연구기관 분야별 선정 대상기관 및 선정기준

구분	분야		선정기준
박사 과정	자연계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과학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등	기업부설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 * 창업기업은 1인이상, 그 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2인이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대기업은 제외)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국공립 등 연구기관	국·공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의료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서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특정연구기관 (과기원 外)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자연계 대학부설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지역혁신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방위산업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 산업체 분야별 선정기준

구분	분야	선정기준
기간 산업체	공 업	제조업 또는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제조·매출 실적 있어야 함, 제조·사업시설 타업체와 분리)
	에너지업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광 업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광물채굴 업체(석탄 제외), 선광·제련사업 경영 업체, 1만 2천톤 이상 석탄채굴업체
	건 설 업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의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 하는 업체
	수 산 업	어선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해 운 업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 보유 해상화물 운송사업 경영 업체 또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외항선박 관리업체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참고자료 4]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분	소재지	직원 (공무직)	개소일
서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번길 13 (서울지방병무청 별관)	8 (-)	'20. 7. 1.
대구	대구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2층)	7 (3)	'21. 7.20.
광주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11 (남광빌딩 2~3층)	7 (3)	'21. 7.22.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31 (큐브131빌딩 1층)	7 (3)	'21. 7.15.
부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79 (부산진우체국 5층)	6 (3)	'22. 7.28.
춘천	강원 춘천시 춘천로 201 (대림프라자 1~2층)	4 (1)	'22. 7.26.
수원	경기 수원시권선구권선로 550 (태봉빌딩, 2층)	6 (2)	'23. 7.13.
인천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 155	5 (1)	'23. 7.21.

[참고자료 5] 취업맞춤특기병 및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사업 실적

□ 취업맞춤특기병 사업 실적(5년)

(’23. 12. 31. 기준)

구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인원(명)	2,600	3,200	5,000	5,000	5,000
모집인원(명)	2,716	3,286	5,101	5,098	5,116
취업률*(%)	56.0	57.7	57.6	58.1	58.3

* 취업률은 최근 5개년의 실적으로 산출(’23년: 취업자 4,425명 / 전역자 7,584명)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사업실적

구 분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춘천	수원	인천
’23 년	총계	48,734	8,624	7,104	6,522	7,753	7,124	4,308	4,846	2,453
	방문인원	24,507	3,432	2,814	2,632	4,099	3,956	2,397	3,368	1,809
	상담인원	24,227	5,192	4,290	3,890	3,654	3,168	1,911	1,478	644
’22 년	총계	32,287	8,424	6,852	7,379	6,516	2,122	994		
	방문인원	13,105	2,854	2,054	3,109	3,523	1,008	557		
	상담인원	19,182	5,570	4,798	4,270	2,993	1,114	437		
’21 년	총계	16,310	8,783	3,147	2,522	1,858				
	방문인원	5,153	4,008	2,254	1,008	675				
	상담인원	8,365	4,775	893	1,514	1,183				
’20 년	총계	3,022	3,022							
	방문인원	664	664							
	상담인원	2,358	2,358							

주) 방문인원은 초·중·고등학생, 교사 및 부모 등으로 체험·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상담인원은 병역을 준비하는 병역의무자가 주요 대상으로 1:1병역진로상담까지 제공받는 사람을 의미함.

[참고자료 6]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1) 메타버스 입영문화제 사업 필요성 여부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메타버스 입영문화제 사업은 예산 편성 시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고, 사업추진 방식이 부적절했으며 내용 또한 부실함 ○[시정요구사항] 부적정한 메타버스 입영문화제 사업 필요성 여부 재검토 및 사업 필요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 향후 편성내역에 맞게 예산 집행 철저 ○ 현재 전체 입영부대의 10% 정도만 현장 입영문화제 개최하고 있어 입영문화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 현장 입영문화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겠음. ○ 조치완료일 : ’24년 4월 30일	조치 완료
(2)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병역관리체계 구축 필요	○[지적사항]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뇌전증, 정신질환 위장 등 지능화·고도화된 병역면탈 범죄는 지속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병역면탈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뇌전증(최근 5년간 병역면탈 중 33.7%)등 일부 질환의 경우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병역면탈은 주로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역면탈 가능성의 사전진단 및 분석,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제도 개선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추진 - 질환의 발생빈도, 치료이력 등 고려 신체등급 판정기준 구체화 * 뇌전증 학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군의관·전담의사 실무회의 등 ○ 면탈 시도·우려가 있는 질환 ‘중점관리대상질환’으로 선정·관리 * 뇌전증, 이상운동증 등 6개 신규 중점관리대상질환 지정(’23.3.30.) ○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병역법 개정(’24. 5. 1. 시행)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근거 신설(제81조의3)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근거 신설(제87조의2) ○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4. 7. 17. 시행)	조치 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 최근 5년간 유형별 병역면탈 현황(2023.6.30. 기준) (단위: 명) <table><tr><th>년전 중 위 장</th><th>정 신 질 환 위 장</th><th>고 의 체 중 · 감 량</th><th>고 의 문 신</th><th>청 력 질 환 위 장</th><th>정 형 의 과 질 환 위 장</th><th>기 타</th><th>총 계</th></tr><tr><td>136</td><td>96</td><td>74</td><td>35</td><td>16</td><td>16</td><td>30</td><td>403</td></tr></table>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 화할 것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 화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교사·방조자 등 처벌근거 신설, 특사경 전문성 강화, 인센티브 부 여 등 병역면탈 범죄 시도 를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한 병역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년전 중 위 장	정 신 질 환 위 장	고 의 체 중 · 감 량	고 의 문 신	청 력 질 환 위 장	정 형 의 과 질 환 위 장	기 타	총 계	136	96	74	35	16	16	30	403		<table><tr><th>현 행</th><th>확 대</th></tr><tr><td>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 쓴 행위, 병역 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대리 수검 행위 단속</td><td>(추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유통자, 병역 기피·감면목적 도망·행불자, 신체검사 및 장소집등 기피자</td></tr></table> ○ 병무청 특사경 조직·인력 확대 (*24. 1. 1.) - (조직) 본청 사이버조사과 및 경인청 병역조사과 신설 * (기존) 본청 1개 과, 2개 광역청, 12개 현장청 (확대) 본청 2개 과, 3개 광역청, 11개 현장청 - (인력) 특사경 인력 20명 증원 (40명→60명) ○ 데이터 기반 병역면탈 방지체계 구축 관련 '24년도 예산 확보 - 질량분석기 도입(2.8억), 병역면 탈 통합 조기경보체계(5.8억),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 검색· 분석체계 도입(1.7억)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 단」 구성」운영 등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 - 시민, 병역의무자 등 25명 선 발·운영(*23.5월) 및 조장정보 모 니터링, 삭제 등 감시활동 * 키워드(122개)활용 관련 사이트 (203개)모니터링, 2,858건 단속 ○ 공정병역 문화 확산을 위한 병 역이행 문화 확산 추진 - 네이버 지식인 답변 등 온·오프 라인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 네이버 지식인 관리 지정 운영 /	현 행	확 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 쓴 행위, 병역 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대리 수검 행위 단속	(추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유통자, 병역 기피·감면목적 도망·행불자, 신체검사 및 장소집등 기피자	
년전 중 위 장	정 신 질 환 위 장	고 의 체 중 · 감 량	고 의 문 신	청 력 질 환 위 장	정 형 의 과 질 환 위 장	기 타	총 계																	
136	96	74	35	16	16	30	403																	
현 행	확 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 쓴 행위, 병역 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대리 수검 행위 단속	(추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유통자, 병역 기피·감면목적 도망·행불자, 신체검사 및 장소집등 기피자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답변 현황 :255건 - 공정병역 문화 확산을 위한 병역의 무자, 행정사 등 홍보·교육 강화 *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동영상 유튜브, SMR(영상광고)홍보 (’23. 6. 20. ~ 7.19.) * 행정사 연수교육 시 병역면탈 예방 교육(월1~2회, 총 1,823명) * 15개 검사장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대상 병역면탈 예방 교육(연중)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3)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제도 활성화 필요	○[지적사항]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제도는 전담의사가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개월의 범위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제도로, 병무청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고 있음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1억 3,300만원이며 이중 67%인 8,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유로는 전체 수련대상(154명) 중 34%인 52명만 수련을 실시한 것에 기인함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수련 실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담의사가 수련하는 병원(군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병원)을	제도 개선	○ ’23년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관련 설문조사(’23.8월) - ’23년 수련 희망여부 사전조사 결과(응답자 중 53.3% 수련희망) ○ 병무청 주관 국·공립병원 등 관계기관 홍보 및 안내 - 소속기관별 병무청 지정병원 간담회 개최 시 수련제도 홍보(9~12월) - 국·공립병원 전담의사 수련제도 홍보 및 안내(10월) ○ ’23년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 기 간 : 지 방 청 (’ 2 3 . 1 2 . 2 6 . ~ ’ 2 4 . 1 . 3 1 .) / 중검소 (’ 2 4 . 1 . 2 . ~ 2.23.) * 입영판정검사 및 추가 검사일 정상 근무(주 2일) - 인 원 : 총 153명 중 59명(1년차 23명, 2년차 14명, 3년차 22명) * 21년 71명(46.1%) → ’22년 52명(33.8%) → ’23년 59명(38.6%) - 기관별 현황 : (국·공립) 7개 병원(11.9%) / (사립) 52개 병원(88.1%)	조치 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찾기 어려운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 실시 현황 (단위: 명,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총원</th><th colspan="4">수련 실시 현황</th></tr><tr><th>사 립 병 원</th><th>군 병 원</th><th>국 공 립 병 원</th><th>계</th></tr><tr><td>2018</td><td>151</td><td>100</td><td>-</td><td>8</td><td>108 (72%)</td></tr><tr><td>2019</td><td>151</td><td>95</td><td>-</td><td>11</td><td>106 (63%)</td></tr><tr><td>2020</td><td>153</td><td>70</td><td>-</td><td>9</td><td>79 (52%)</td></tr><tr><td>2021</td><td>154</td><td>64</td><td>1</td><td>5</td><td>70 (45%)</td></tr><tr><td>2022</td><td>154</td><td>45</td><td>1</td><td>6</td><td>52 (34%)</td></tr></table>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제도 홍보 등으로 병역판 정검사 전담의사가 수련 할 수 있는 병원을 확충 하여 수련 참여율을 높이 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 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구분	총원	수련 실시 현황				사 립 병 원	군 병 원	국 공 립 병 원	계	2018	151	100	-	8	108 (72%)	2019	151	95	-	11	106 (63%)	2020	153	70	-	9	79 (52%)	2021	154	64	1	5	70 (45%)	2022	154	45	1	6	52 (34%)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구분	총원			수련 실시 현황																																								
		사 립 병 원	군 병 원	국 공 립 병 원	계																																							
2018	151	100	-	8	108 (72%)																																							
2019	151	95	-	11	106 (63%)																																							
2020	153	70	-	9	79 (52%)																																							
2021	154	64	1	5	70 (45%)																																							
2022	154	45	1	6	52 (34%)																																							
(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명확화 필요	○[지적사항] 「병역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의 혈압 측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지방병무청별 로 검사결과가 상이한 것으 로 보임 - 검사규칙에는 ‘혈압은 신검 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혈	제도 개선	○ 혈압측정 방법 표준화 지침 마 련·시행(’23.8월) - (기존) 긴장감을 풀게 한 후 안정 된 상태에서 혈압측정기로 측정 - (변경) 준비단계, 측정자세로 구분 하여 상세하게 명시 * 혈압측정방법 표준화 방안 지침 시행 후 검사규칙 개정반영	조치 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압측정기로 ‘측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각 지방 병무청별로 ‘안정된 상태’가 어떤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부터 2022년 혈압정밀재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병무청의 경우 4급 및 5급 판정자가 검사인원의 86.1%를 차지하는 반면, 전남·경남의 경우 54.2%, 57.4%를 차지하여 지방병무청간에 편차가 있음 ※ 2020~2022년 지방병무청별 혈압정밀재검사 결과 (단위: 명,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정상 및 2급</th><th colspan="2">4급</th><th colspan="2">5급</th><th rowspan="2">계</th></tr><tr><th>인원</th><th>비율</th><th>인원</th><th>비율</th><th>인원</th><th>비율</th></tr><tr><td>서울</td><td>26</td><td>13.8</td><td>161</td><td>85.6</td><td>1</td><td>0.5</td><td>188</td></tr><tr><td>전남</td><td>33</td><td>45.8</td><td>39</td><td>54.2</td><td>-</td><td>-</td><td>72</td></tr><tr><td>경남</td><td>23</td><td>42.6</td><td>29</td><td>53.7</td><td>2</td><td>3.7</td><td>54</td></tr><tr><td>전체</td><td>270</td><td>26.3</td><td>744</td><td>72.6</td><td>11</td><td>1.1</td><td>1,025</td></tr></table>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혈압측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검사규칙을 명확화할 것	구분	정상 및 2급		4급		5급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26	13.8	161	85.6	1	0.5	188	전남	33	45.8	39	54.2	-	-	72	경남	23	42.6	29	53.7	2	3.7	54	전체	270	26.3	744	72.6	11	1.1	1,025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24. 2. 1.시행) * 신체검사 규칙 제6조, 제8조 개정 ◎ 준비 단계(제6조) ▶ 신체검사 직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함 - 혈압측정 전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혈압측정 중에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 측정 자세(제8조) ▶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5분 이상 안정하여 긴장을 해소한 후 <u>바른 자세(등을 바르게 펴고 다리를 꼬지 않은 채로 평평한 땅에 양 발을 닿게 한 상태를 말한다)</u>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신체검사대상자의 <u>맨팔 또는 얇은 옷을 입은 팔을 자동혈압측정기에 넣어 측정하되, 자동혈압측정기로 측정한 결과가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동혈압기로 다시 측정한다.</u>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구분	정상 및 2급		4급		5급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26	13.8	161	85.6	1	0.5	188																																											
전남	33	45.8	39	54.2	-	-	72																																											
경남	23	42.6	29	53.7	2	3.7	54																																											
전체	270	26.3	744	72.6	11	1.1	1,025																																											
(5)잠복결핵검사 미 실시 인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지적사항] 병무청이 실시해 오고 있는 잠복결핵검사에서 매년 양성판정자가 나오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400~500명 수준의 잠복결핵검사 미검 인원이 발생하고 있음 - 양성판정자의 경우 판정	제도 개선	○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에 대한 필요성 적극 안내 - 채혈 전 잠복결핵검사 미동의 수검자에게 1:1 설명 * 잠복결핵검사 추가에 따른 채혈량 증가는 3~4cc로 미미함을 설명하고 잠복결핵검사 필요성을 적극 안내	조치 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이후 질병관리청 등에서 치료를 지원하나, 검사 미 실시자의 경우 치료를 지원받을 수 없음 - 또한 병역판정검사 시 모든 검사대상자에게 채혈이 실시되고 있으며 잠복결핵 검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혈액량은 3ml 내외인 수준이나, 잠복결핵검사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항목에 속하지 않아 별도로 검사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 2017~2022년 잠복결핵검사 실시 현황 (단위: 명) <table><tr><th rowspan="2">연 도</th><th colspan="2">검사 실시</th><th rowspan="2">검사 미실시</th></tr><tr><th>음성</th><th>양성</th></tr><tr><td>2017년</td><td>324,008</td><td>9,731</td></tr><tr><td>2018년</td><td>315,444</td><td>8,347</td></tr><tr><td>2019년</td><td>328,175</td><td>4,351</td></tr><tr><td>2020년</td><td>285,765</td><td>3,049</td></tr><tr><td>2021년</td><td>255,010</td><td>5,094</td></tr><tr><td>2022년</td><td>252,663</td><td>2,568</td></tr></table>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잠복결핵 검사 미실시 인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연 도	검사 실시		검사 미실시	음성	양성	2017년	324,008	9,731	2018년	315,444	8,347	2019년	328,175	4,351	2020년	285,765	3,049	2021년	255,010	5,094	2022년	252,663	2,568		○ 잠복결핵검사 미실시 인원 감소 : ('22년) 725명 → ('23년) 354명 * 잠복결핵검사 실시 현황 (단위: 명, %) <table><tr><th rowspan="3">연 도</th><th colspan="3">검사 대상</th><th rowspan="3">검사 미실시</th><th rowspan="3">미실시율</th></tr><tr><th colspan="3">검사 실시</th></tr><tr><th>음성</th><th>양성</th><th>소계</th></tr><tr><td>2017년</td><td>324,008</td><td>9,731</td><td>333,739</td><td>591</td><td>0.18</td></tr><tr><td>2018년</td><td>315,444</td><td>8,347</td><td>323,791</td><td>438</td><td>0.14</td></tr><tr><td>2019년</td><td>328,175</td><td>4,351</td><td>332,526</td><td>564</td><td>0.17</td></tr><tr><td>2020년</td><td>285,765</td><td>3,049</td><td>288,814</td><td>390</td><td>0.13</td></tr><tr><td>2021년</td><td>255,010</td><td>5,094</td><td>260,104</td><td>417</td><td>0.16</td></tr><tr><td>2022년</td><td>252,663</td><td>2,568</td><td>255,231</td><td>725</td><td>0.28</td></tr><tr><td>2023년</td><td>240,783</td><td>3,776</td><td>244,559</td><td>354</td><td>0.14</td></tr></table>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연 도	검사 대상			검사 미실시	미실시율	검사 실시			음성	양성	소계	2017년	324,008	9,731	333,739	591	0.18	2018년	315,444	8,347	323,791	438	0.14	2019년	328,175	4,351	332,526	564	0.17	2020년	285,765	3,049	288,814	390	0.13	2021년	255,010	5,094	260,104	417	0.16	2022년	252,663	2,568	255,231	725	0.28	2023년	240,783	3,776	244,559	354	0.14	
연 도	검사 실시		검사 미실시																																																																															
	음성	양성																																																																																
2017년	324,008	9,731																																																																																
2018년	315,444	8,347																																																																																
2019년	328,175	4,351																																																																																
2020년	285,765	3,049																																																																																
2021년	255,010	5,094																																																																																
2022년	252,663	2,568																																																																																
연 도	검사 대상			검사 미실시	미실시율																																																																													
	검사 실시																																																																																	
	음성	양성	소계																																																																															
2017년	324,008	9,731	333,739	591	0.18																																																																													
2018년	315,444	8,347	323,791	438	0.14																																																																													
2019년	328,175	4,351	332,526	564	0.17																																																																													
2020년	285,765	3,049	288,814	390	0.13																																																																													
2021년	255,010	5,094	260,104	417	0.16																																																																													
2022년	252,663	2,568	255,231	725	0.28																																																																													
2023년	240,783	3,776	244,559	354	0.14																																																																													
(6)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인원 감축 필요	○[지적사항]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장기대기 사유 전시기근로역 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임	제도 개선	<보충역 유입인원 감소 및 공급 감축>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 추진일정 · 검사규칙 개정 소요(안) 국방부 제출 : '23. 4. 12. · 국방부 · 병무청 과장급 정책 실무회의 : '23. 10. 18.	조치 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요원 배정인원은 2019년 35,633명에서 2023.4월 29,5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사회복지복무요원 배정현황 (단위: 명) <table><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4</th></tr><tr><td>사회서비스</td><td>22,094</td><td>24,530</td><td>25,241</td><td>22,042</td><td>21,855</td></tr><tr><td>행정</td><td>13,539</td><td>10,535</td><td>10,234</td><td>8,170</td><td>7,726</td></tr><tr><td>합계</td><td>35,633</td><td>35,145</td><td>35,475</td><td>30,212</td><td>29,581</td></tr></table> - 반면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는 2019년 이후 1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약 1만명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음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2023.7월말 기준) (단위: 명) <table><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처분자수</td><td>11,457</td><td>15,331</td><td>14,485</td><td>10,740</td><td>10,545</td></tr></table>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사회복지복무요원 소집대기인원이 감축될 수 있도록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을 통한 보충역 유입인원 감소, 안전관리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하여 소집 대기인원 및 장기대기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4	사회서비스	22,094	24,530	25,241	22,042	21,855	행정	13,539	10,535	10,234	8,170	7,726	합계	35,633	35,145	35,475	30,212	29,581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처분자수	11,457	15,331	14,485	10,740	10,545		· 국방부 장관 결재 : ’23. 11. 14. · 공포 및 시행 : ’24. 2. 1. - 주요 개정 내용(보충역 판정기준 강화) · 신장체중 4급 기준 : 16미만, 35이상 → 15미만, 40이상 · 편평족 4급 기준 : 16도이상 → 30도이상 · 굴절이상(난시) 4급 기준 : 5.00D이상 → 6.00D이상 ○ 보충역 중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우선 선발 -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복무희망 접수(’23.7.10.~12.31.) - ’24년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23.12월)·입영(’24.1월~) * 사회복지복무요원 중 현역복무선택 현황(’21.10.14.~’23.12.31.) : 6,161명 *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신청인원 : 807명 ○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 처분 인원 감소 - 각 軍 협의를 통한 보충역 처분인원 지속적 감소 * 21년 310명 → 22년 255명 → 23년 224명 * 전년 동기간 대비 221명 ↓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 확대·발굴 등> ○ 소방청 등 민생·재난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확대(193명) * 24년 배정인원 소방청(527명→678명) 철도공사(875명→917명) ○ 지역아동센터 임무확대(차량동승 보호자)로 사회복지 수요 추가 발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4																																			
사회서비스	22,094	24,530	25,241	22,042	21,855																																			
행정	13,539	10,535	10,234	8,170	7,726																																			
합계	35,633	35,145	35,475	30,212	29,581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처분자수	11,457	15,331	14,485	10,740	10,545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 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마 련할 것		* 아동복지시설 전년 대비 178명 소요 증가 (’23년 2,875명 → ’24년 3,053명) ○ 보건복지분야 수요 감소 최소화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신설·계 속유지(’23년 ~ ’24년) * 연도별 배정현황 (’22년)14,882명 → (’23년)14,562명 → (’24년)14,544명 * 지표명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 무요원 소요 요청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1일																																											
(7)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필요	○[지적사항] 사회복지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학대 등의 사건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복무지도관의 실태조사 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무요 원 복무 관리에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음 - 언론을 통한 사회복지무요원 의 장애인 폭행, 노인학대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 도되고 있으며, 형사기소가 발생하기도 함 ※ 시설이용자 학대 금지 위반 현황 (단위: 건) <table><tr><th>구분</th><th>20 18</th><th>20 19</th><th>20 20</th><th>20 21</th><th>20 22</th><th>계</th></tr><tr><td>노인</td><td>-</td><td>-</td><td>-</td><td>1</td><td>4</td><td>5</td></tr><tr><td>장애인</td><td>-</td><td>1</td><td>2</td><td>2</td><td>8</td><td>13</td></tr><tr><td>아동</td><td>-</td><td>1</td><td>1</td><td>3</td><td>1</td><td>6</td></tr><tr><td>기타</td><td>-</td><td>1</td><td>2</td><td>5</td><td>1</td><td>9</td></tr><tr><td>계</td><td>-</td><td>3</td><td>5</td><td>11</td><td>14</td><td>33</td></tr></table> - 2022년에는 적발된 14명 중 9인이 복무기관 재지정을 통해 복무기관이 변경되었	구분	20 18	20 19	20 20	20 21	20 22	계	노인	-	-	-	1	4	5	장애인	-	1	2	2	8	13	아동	-	1	1	3	1	6	기타	-	1	2	5	1	9	계	-	3	5	11	14	33	제도 개선	○ 복무규정위반자에 대해 퇴직공무원(24 명) 활용한 멘토지도관 사업 운영 * ’23년 멘토지도관 : 멘티 311명, 상담건수 2,784건 ○ 조사인력 부족 등 고려 일부 복무 기관에 대해 불시 실태조사 실시 * ’23년 불시 실태조사 : 2회, 병적별도관리 사회복무요원 상반기 667명 하반기 507명 ○ 복무지도관, 복무기관 담당, 사 회복지무요원의 교육 강화 - (복무지도관) 전문성 제고 위해 자격증반 신설 * 갈등관리지도사(민간자격증) 취 득과정 운영(’23.10월, 27명 실시) - (복무기관 담당) 복무부실 사례 위주 현장 중심 교육 실시 * ’23년 기본교육 24,774명(172회) / 전문교육 676명(30회) 실시 - (사회복지무요원) 복무현장사례 위주 및 사회복지분야 별도반 편성 교육 * 우수사례 등 교재만영(53건), 사 회복지분야 맞춤교육(3,734명)	조치 완료
구분	20 18	20 19	20 20	20 21	20 22	계																																								
노인	-	-	-	1	4	5																																								
장애인	-	1	2	2	8	13																																								
아동	-	1	1	3	1	6																																								
기타	-	1	2	5	1	9																																								
계	-	3	5	11	14	33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으나, 「병역법」 제89조의3은 시설이용자 학대 등의 경우 ‘4번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어 고발 조치 등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시설이용자에 대한 학대 등이 적발되는 경우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복무지도관 편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행위임을 고려하여 타 복무의무 위반행위보다 가중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부실, 복무기관의 권익침해 사례 등 사건·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 구축(’23. 12월) - 매뉴얼 배포(’24. 1월), 시범운영(1~2월), 개선사항 반영 전면운영 중(4월~) * 사회복지요원 사건·사고 등 집중 관리시스템 : 개인상담·고충해소 등 적기 조치, 사후결과까지 종합적 관리하는 시스템 ○ 시설이용자(노인·장애인·아동) 폭행·학대 등을 한 사회복지요원은 우선 교육 선발하여 복무지도교육 실시(’24년 교육운영 계획 반영) * 복무지도교육 연간 계획인원(예산감축·시설 등 고려, 나래 520명 / 새롭 400명) 대비 복무규정위반 인원(연간 2,000여명, 복무인원의 4% 수준)이 많아 미 실시 인원 발생 ○ 복무의무위반 사유 중 시설이용자 폭행·학대 등의 처벌 강화 추진(병역법 제89조의3 개정, ’24.2.6 공포, ’24.5.7.시행) * 現 경고처분 4회 이상 고발 → 경고처분 3회 이상 시 고발 ○ 행안부에 복무지도관(’24년 9명) 증원 요구하였으나 정부인력 억제 정책으로 미반영 ○ 조치완료일 : ’24년 4월 30일	
(8)대체역 심사기간 단축	○[지적사항]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편입 여부 결정	주의	○ ’23년 접수자부터 심사적체가 해소됨에 따라 법정처리기간을	조치 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필요	을 함에 있어 법정처리기간을 위반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심사 적체를 사유로 지속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의결을 하고 있음 - 또한 2021년도 하반기부터의 법정처리기간 준수여부를 살펴보면, 최대연장가능 기간(150일 = 법정시한 90일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연장심사기간 60일)을 위반한 심사건수도 467건 발생하였음 ※ 2021.6.30. 이후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현황 (단위: 건)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신청 시점</th><th colspan="3">결정기간</th><th rowspan="2">계</th></tr> <tr> <th>90 일 이 내</th><th>90 일~ 150 일</th><th>150 일 초 과</th></tr> </thead> <tbody> <tr> <td>2021년 하반기</td><td>1</td><td>3</td><td>303</td><td>307</td></tr> <tr> <td>2022년</td><td>9</td><td>243</td><td>164</td><td>407</td></tr> <tr> <td>합 계</td><td>10</td><td>246</td><td>467</td><td>714</td></tr> </tbody> </table> 주) 2021년 하반기 이전은 「대체역법」 최초시행에 따른 특례기간이었음 - 차년도로 심사 건수가 적체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적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전년도만큼의 사전회의 및 전원회의 개최 건수를 확보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병무청은 오히려 개최 건수를 전년에 비해 감소시킴 * 사전회의: 2021년 144회 개최 → 2022년 112회 개최 * 전원회의: 2022년 33회 개최 → 2022년 25회 개최	신청 시점	결정기간			계	90 일 이 내	90 일~ 150 일	150 일 초 과	2021년 하반기	1	3	303	307	2022년	9	243	164	407	합 계	10	246	467	714		준수하고 있음 - (’23년 9월) 처리기간 준수율 : 100% ○ 대체역 편입 접수·처리 현황을 수시로 분석, 신청집중 시기에는 심사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23년 전원회의 계획(19회) 대비 4회 추가(23회) 개최 ○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3.12.13.)을 통해 심사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 제21조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특정 시기에 대체역 편입신청이 집중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체역 편입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네 가지로 명시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13일	
신청 시점	결정기간			계																							
	90 일 이 내	90 일~ 150 일	150 일 초 과																								
2021년 하반기	1	3	303	307																							
2022년	9	243	164	407																							
합 계	10	246	467	714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연장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9)대체역 복무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	○[지적사항] 대체역 복무기간의 부족으로 대체역 편입 결정 이후에도 현재 기준으로 2~4년의 대기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2021년 상반기에는 소집희망 신청자의 대기일수가 173~327일이었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570~766일까지 대기일수가 증가하였음 ※ 대체역 소집희망 신청 후 선발자의 대기기간 (단위: 일)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th>신청시기</th><th>소집 대기</th><th>대기 일수</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21</td><td>상반기</td><td>2020.12.</td><td>최단 최장</td><td>172 327</td></tr> <tr> <td>하반기</td><td>2021.6.</td><td>최단 최장</td><td>311 453</td></tr> <tr> <td rowspan="2">2022</td><td>상반기</td><td>2021.12.</td><td>최단 최장</td><td>367 649</td></tr> <tr> <td>하반기</td><td>2022.6.</td><td>최단 최장</td><td>570 766</td></tr> </tbody> </table> ○2023.4월 기준, 대체역 복무자는 1,164명으로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면 매년 평균 388명이 전역하는데, 현재 복무대기자가 1,610명으로	구분		신청시기	소집 대기	대기 일수	2021	상반기	2020.12.	최단 최장	172 327	하반기	2021.6.	최단 최장	311 453	2022	상반기	2021.12.	최단 최장	367 649	하반기	2022.6.	최단 최장	570 766	주의	○ ’23년 복무시설 5개소를 확충하여 ’23. 12월 기준 총 27개 복무시설 확보(’25년까지 총 34개소로 확대 예정) ○ ’25년까지 복무시설 총 정원을 확대(총 283명)하기로 법무부와 협의완료 * (당초) 32개소 1,620명 → (확대) 34개소 1,903명 ※ 복무시설 확충 및 수용 가능인원 증원 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연 도</th><th>’22년</th><th>’23년</th><th>’24년 (예측)</th><th>’25년 (예측)</th></tr> </thead> <tbody> <tr> <td>시설수 (누적)</td><td>22</td><td>27</td><td>31</td><td>34</td></tr> <tr> <td>수용 정원</td><td>1,141</td><td>1,441</td><td>1,687</td><td>1,903</td></tr> </tbody> </table> ○ 현재 공사 중인 복무시설의 조기 완공을 법무부와 지속협의 ○ (참고) 소집대기자는 ’23년말 기준 1,529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6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28년부터 소집대상자 부족 예상) ※ ’23. 12월말 기준 총 소집자(1,493명)의 평균 대기기간은 15개월(445일)이며, 현재 대기자 중 일부는 최대 2년여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	연 도	’22년	’23년	’24년 (예측)	’25년 (예측)	시설수 (누적)	22	27	31	34	수용 정원	1,141	1,441	1,687	1,903	조치 완료
구분		신청시기	소집 대기	대기 일수																																						
2021	상반기	2020.12.	최단 최장	172 327																																						
	하반기	2021.6.	최단 최장	311 453																																						
2022	상반기	2021.12.	최단 최장	367 649																																						
	하반기	2022.6.	최단 최장	570 766																																						
연 도	’22년	’23년	’24년 (예측)	’25년 (예측)																																						
시설수 (누적)	22	27	31	34																																						
수용 정원	1,141	1,441	1,687	1,903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산술적으로는 최대 4년의 대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대체복무 시설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대체역 복무기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조치완료일 : ’23년 7월 4일	
(10)입영문화제 수행기관 일원화 및 프로그램 내실화 필요	○[지적사항] 현역병 입영문화제 사업은 기초군사훈련 입소식에서 입영자를 축하하고 입영자의 부모와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임 - 연중 안정적인 행사 추진과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입영문화제 사업 수행 방식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상반기 입영문화제의 경우 각 지방청에서 직접 추진한 반면, 하반기 입영문화제의 경우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위탁 실시하였음 - 또한 동 사업은 병무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범사업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한 해 동안 실시된 486회의 입영행사 중 11%에 불과한 56회만 입영문화제가 개최되었음	제도 개선	○ ’23년 입영문화제 행사 일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완료 - 외부 전문업체 위탁으로, 행사 전문성·효율성 제고(총 60회) - LED 응원영상 송출·공연, 포토존·편지쓰기·캐리커처 등 표준화된 프로그램 마련·운영 ○ ’24년 입영문화제 사업추진 방식 일괄 위탁 계약체결 완료 - 계약일자 : ’24. 3. 19.(60회) ○ 참여자 의견 반영, 프로그램 다양화 등 ’24년 입영문화제 행사품질 제고 위한 조치 완료 - 현역병 입영문화제의 효과를 많은 입영자·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행사 조기 개최(’23년 5월→’24년 3월부터) - 인생 4컷형 포토존 도입, AI 캐리커처 및 청춘공작소 등 참여자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부대·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풍성한 행사 실시 ○ 조치완료일 : ’24년 4월 30일	조치 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연중 안정적인 행사 추진과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입 영문화제 사업 수행 방식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 극적인 지원으로 전체 입영 부대에 확대 시행할 것			
(11)장병내일준 비적금 및 사회복귀준비금 제도개선 필요 등	○[지적사항] 사회복귀준비금 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 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사회 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22 년 1월 납입분부터 원금· 이자 총액의 일부를 국가 가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예산액 303억 100 만원 중 116억 7,300만원을 집행(집행률 38.5%)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음 *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유 는 예산 편성 시 사회복 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 금 가입률을 현역병과 동 일한 가입률 기준(95%) 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함 * 예산 편성 당시 사회복무 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44%수준이었음 - 2023.7월 기준으로도 사 회복무요원들의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률이 74.7% 수준으로 일반병 가입률 98.0%에 비해 미가입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미 가입자들의 미가입 사유 등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	제도 개선	○ ’23년도 예산 감액 편성(’22.12 월) - 국방부와 동일한 가입률(95%)로 정부안 편성했으나, 국회 심사과 정에서 적정 가입률(77.45%) 산정, 196억 감액하여 편성 * 77.45%: ’22. 8월 가입률(70.7%)과 ’23년도 예상 가입률(84.2%)의 평균 값 * ’23년 예산 : (기재부 정부안) 1,061억원 → (국회심사) 866억원 편성 ○ ’24년도 예산 감액 편성(’23.12 월) - 가입률 및 향후 가입률 상승 고려, 가입률 91%로 정부안 편성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연도별 적금 가입률을 차등 적 용한 적정 가입률(88.2%) 및 실제 가입 금액을 반영, 124.5억원 감 액하여 편성 * ’88.2% : ’24년 지급대상자의 연 도별 가입률 차등 적용 (’22년 80%, ’23년 86%, 24년 93% 예상) * ’24년 예산: (기재부 정부안) 1,722.9억원 → (국회심사) 1,597.4억원 편성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현황 자 체 설문조사(’23.5월) - 대상/방법 : 6,000명 / 알림톡	조치 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악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생계가 어려워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사회복무요원에게 역차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예산편성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할 것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사전에 적금 가입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할 것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미가입자 등이 발생하는 사유 및 미가입자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복귀준비금 가입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중 적금 가입 여력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것		* 35% 응답(2,104명) - 설문결과 : 응답자의 94%(1,978명) 가입, 6%(126명) 미가입 * 미가입 원인: 가입 여력 부족 48.3%(61명) > 개인사유 28.7%(36명) 등 ○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방안 추진 -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병역법 시행령(제158조의2) 개정추진(’22.11월, 국방부 → 기재부 불수용) * 주요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일부 은행 우대금리(3%) 적용 * 기업은행 ’24.1월 시행, 국민은행 ’24.5월(예정) ○ 병역이행단계별 적극 안내로 적금 가입률 증가 * 적금 가입률 : (’22.1월) 52% → (’22.12월) 75% → (’24.3월) 88% ○ 적금 가입조건 개선으로 가입 대상자 확대 - 기재부 협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4. 2. 29) / 시행 ’24. 6.1. * (종전)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자 → (개정안) 1개월 이상자 ○ 적금 가입 편의성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가입은행 확대 추진 - (’23년, 1개) 국민은행 → (’24년 4월, 2개) 국민은행, 수협 * 나라사랑포털 앱 등 활용, 확대(’24년까지 14개 은행 확대(예정)) ○ 향후 계획 - 적금 가입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계속)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 소집 후 7일 이내 및 가입자자격확인 서 미발급자 대상 알림톡 안내(매월) ○ 조치완료일 : ’24년 4월 30일	
(12)정보시스템 구축시 감리 실시 필요	○[지적사항] 의사결정지원시 스템 사업은 노후화된 통 계시스템 교체 및 빅데이 터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 및 솔루션 도입 사업임 - 병무청은 동 사업에 예산 6억 9,25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6억 9,074만원을 집행(집행률 99.7%)하였고, 17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전자정부법」 및 그 시행 령에 의거 5억원 이상 정 보화시스템 구축 사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화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 우 감리를 의무화 하고 있음 * 병무청은 의사결정시스템은 5억원 이상의 사업이지만 데이터 이관·정비 등의 단 순비용(5.6억원)을 제외한 개발비용은 1.3억원으로 5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감리대상 사업이 아니라 고 판단,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시정요구사항] 병무청은 감리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 구축비 기준 5억원 이상 사업, 대민서비스 관	제도 개선	○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 추진 방안 마련·시행(’23.8~9월) - 정보시스템 <u>구축사업</u>(’23~’24년) 에 대한 감리대상 여부 재검토 ⇒ 내부업무용 및 5억원 이하 사업에 해당하여 감리 비대상 - 정보시스템 <u>유지보수 사업</u>(’24년) 에 대해 감리대상 여부 검토 ⇒ 전년(’23년) 유지관리 사업 대 비 변동이 미미하여 감리수행 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 감리 수행 불필요(과업심의위원회) ○ 향후 계획 -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감리대상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시행 ○ 조치완료일 : ’23년 9월 22일	조치 완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4.4. 30.)
	련 사업, 시스템유지보수 사업 등 정보화시스템 구 축 시 감리를 추진할 방안 을 마련할 것			